

### 5-9. 여러동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

#### 질의요지

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"대"인 1필지(34,083㎡)상에 공장, 창고, 주거시설 등 21동이 있는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?

#### ● 회신 내용

- 먼저 건축법상 동일 대지안에 있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건축물들은 1개의 건축물로 관리되고,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이 1건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면, 1개의 필지상에 여러동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.

(관리58407-612, '03.4.25)

### 5-10. 창고신축을 위한 토지분할

#### 질의요지

1필지의 토지면적이 368㎡로 창고를 신축하는데 분할 후 남는 면적이 69㎡인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?

#### ● 회신 내용

- 귀 질의의 경우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창고신축을 위한 토지의 분할 후 남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」 제16조제4호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(2AA-1108-199275, '11.9.2)